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4
------	-----

2019. 4. 25.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2월 31일,
김호평 의원(찬성의원 16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1월 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2.25.) 상정,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심사보류)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4.25.) 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송재혁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3조).
- 나. 협약체결,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제8호)에 대한 의결방법과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조례안의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외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가입금의 부과·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처리 ▶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등으로 정하고 있음(제39조 제1항).
- 제정안은 이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지금까지 서울시는 대내·외 투자유치와 시정발전을 이유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합의·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서울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¹⁾에 관한 사항이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했음.
 - 2017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시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체결한 양해각서(MOU)¹⁾는 총 420건이며, 이 중 상호 노력 의무만 약정하는 양해각서 외에도, 협약 체결 이후 예산이 수반되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1)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단체와 단체 사이에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하기로 약속하여 정한 협정이나 협약. 또는 그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의미하며, 순화어 및 표준화 용어로 “업무 협정”, “업무 협약”, “양해 각서”가 있음(국립국어원)

- 제정안은 이처럼 협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후 세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 등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
- 이는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사전적·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²⁾,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협약 상대방 측 입장에서는 영업이나 투자관련 정보의 기밀성과 보안성 저하로 인하여 각종 협약체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시도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전국 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2)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배분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협약등”은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다른 국내외의 기관·단체 등과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협약등을 체결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집행권한으로 보기는 어렵고(법제처 2016. 6. 17. 의견제시 16-0149 참조), 특히, 협약등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등 수원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에 그 협약등은 의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단순한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수원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거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법제처 의견17-0301).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관련 현황>

조례명	자치단체 현황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30개(기초 30)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31개(광역시 8, 기초 23)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1) 의무부담과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3호는 “의무부담”을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호는 “권리의 포기”를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상위 법령의 용어에 대해 하위 법령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 하위법령에 정의규정을 둘 때에는 그로 인해 의미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그런데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 등의 문구는 그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로 규정된 용어의 의미보다 확대·축소되어 해석되거나 법규와의 상충가능성이 있음.³⁾

- 따라서 의미가 모호하고 해석상 혼선을 줄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정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용어를 보다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조례안의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3조제1항은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로 규정하고 있음.
- 반면,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이나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하고 있음.
-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2항 중 “순수한”

3)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 및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 등의 문구는 그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는 것과 달리 “법적 의무를 부담”, “당연한 법적 권리”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법규정과의 상충 가능성이 있고, 같은 호에서 “예산 외”의 사항을 의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정적”인 의무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의무부담”과 “권리의 포기”를 정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같은 용어의 의미보다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 결과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운영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16-0167)).

이라는 용어는 양해각서의 대상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협약체결(안 제4조)

- 안 제4조는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무(의회의 의결사항)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긴급한 사무일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에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체결시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도 조례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의 입법화에는 문제가 없음.

4) 의안형식, 자료제출, 사후관리 등(안 제5조~제7조)

- 안 제5조는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을 협약체결 전(동의안)과 체결 후(사후동의안)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안 제4조에서 협약체결 전 의회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후동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임.
- 안 제6조는 의안 제출 시 ▶구체적인 의무부담과 권리포기 내용

▶비용추계서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와 첨부서류 등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안의 심의와 관련된 필수 서류를 의회가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의안 심사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규정이나, 제출서류를 3가지 사항으로만 제한할 경우 충분한 의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7조는 “협약” 이행 등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진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목적을 달성하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협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4)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사항, 평가결과 등을 시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협약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4)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결방법과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경우 서울시의 주요 정책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시가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 다만, 안 제2조 중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와 같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경우 법령과의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용어 정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 제6조의 의안 제출 시 첨부서류 대상을 추가하고, 일부 인용조문 오류와 오기에 따른 용어 등의 수정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 「없음」

가. 수정이유

- 긴급 사무의 협약 체결 절차를 구체화하고,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 제출시 첨부서류 대상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어 혼선을 줄 여지가 있는 문구, 일부 인용규정의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수정의 주요 내용

- “의무부담”의 정의를 수정(안 제2조).
- 협약 체결 보고 대상을 구체화 함(안 제4조).
- 협약 체결 시 자료제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함(안 제6조제 4호 신설).
- 인용조문 오류, 일부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4
----------	-----------

제안년월일 : 2019년 4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긴급 사무의 협약 체결 절차를 구체화하고,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 제출시 첨부서류 대상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어 혼선을 줄 여지가 있는 문구, 일부 인용규정의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의무부담”의 정의를 수정(안 제2조).
- 나. 협약 체결 보고 대상을 구체화 함(안 제4조).
- 다. 협약 체결 시 자료제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함(안 제6조제 4호 신설).

라. 인용조문 오류, 일부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시”이”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시장”이”로, “추가경정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적 또는 재정적”을 “재정적”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을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단서 중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으로, “조건문”을 “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단서규정”을 “단서”로 한다.

안 제5조제1호 중 “관련”을 “관련 협약”으로, “계획 동의안”을 “협약 계획 동의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단서 규정”을 “단서”로, “협약체결”을 “협약 체결”로 한다.

안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안 제6조제3호 중 “협약체결시”를 “협약 체결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안 제7조제4호 중 “협약사항”을 “협약 사항”으로 한다.

안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
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
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
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
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
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
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
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
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
식을 따른다.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

-----.

제4조(협약체결) ① -----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
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 조건
-----.

② -----

----- 단서-----.

제5조(의안형식) -----

-----.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서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사본

<신 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관련 협약 -----
--- 협약 계획 동의안 ---

2. -----

단서----- 협약 체결 -----

제6조(자료제출) -----

-----.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사후관리)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
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 협약 사
항-----

제9조(시행규칙) -----
필요 -----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